

지연손해금은 그 비율의 인정근거에 따라 ① 지연손해금을 자체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해진 '약정지연손해금', ② 약정이율이 지연손해금률로 의제되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공탁법⁵⁸⁾ 소정의 법정이율이 지연손해금률인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의 '약정이율'을 변제기까지의 이자에 관한 약정이율이 아니라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약정이율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⁵⁹⁾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의 '약정이율'은 변제기 전의 약정이율 및 약정지연손해금률 둘 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옳고, 따라서 변제기 전의 약정이율이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률이 되는 것은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와 달리, 그에 대응하는 의용민법이나 일본민법 제419조 제1항 단서는 명문으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을 넘는 때"에 한하여 약정이율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야 하지만,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60), 61)}

58) 공탁법 제5조,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면,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1로 정해져 있다(전문개정 2015.3.30).

59) 주석민법 채권총칙(1), 656면(유남석 집필). 이 견해에 의하면, 변제기 전 약정이율이 변제기 후 지연손해금률이 되는 것은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도 동일한 취지에서, "부실채권의 양도계약시 우선 매수인이 일정액의 매입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그 매입대금을 정산하여 그 정산에 따른 차액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차액에 대하여 매입대금의 지급일부터 정산일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산일 이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 원심이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에 매입대금의 정산 시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붙이기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도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더하여 최초 매입대금을 반환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산기준일 이후에 적용되는 정산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비율 또한 연 10%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다.

60) 애초에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 할 것이고(민법 제397조 제1항) 다만 그와 다른 이자율의 약정이 있거나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별도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별도의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정이율보다도 낮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비율에 의한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음을 자인한다 하여(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비율에 의한 이자율의 약정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은,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한편, ‘민법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약정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라는 판례⁶²⁾가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판시로 보인다.

1. 민사법정이율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다.⁶³⁾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 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라고 하여 위 95다26797 판결과 배치되는 판시를 하였다.

마침내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은, 위 95다26797 판결을 참조판결로 하여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면서, 위 2009다85342 판결을 참조판결로 하여 “한편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가산할 이자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그 금전반환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논리와 형평의 원리에 맞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여 ‘약정지연손해금’의 경우와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경우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61) 위 2009다85342 판결은, 그 상세한 근거로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칙으로 보면 금전채권자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구체적인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그 손해가 민법 제393조 등의 배상범위에 있는 것이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오늘날 금전의 범용성으로 인하여 그 이용양태는 무궁무진하므로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이용가능성의 박탈이라는 손해가 채권자에게 발생하리라는 것은 쉽사리 일반적으로 추인되는 반면 위와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면 그 구체적인 배상액의 산정은 매우 다양하여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균일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추상적인 손해로서 법정이율로 산정한 액을 기준으로 하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을 마련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균일처리의 필요는 이율을 법정이율보다 낮게 약정한 경우에도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한 마찬가지로 시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이 있으면 이에 좇도록 한 것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으로 족하다고 하면 채권자로서는 위에서 본 대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었을 터인 보다 많은 손해의 주장이 봉쇄됨으로써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한 불합리가 운위될 소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397조에 대응하는 의용민법 제419조는 제1항 단서에서 명문으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을 넘는 때”에 한하여 약정이율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민법의 재정과정에서 그와 달리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위 단서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입법자의사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 62)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위 일반론 판시에 이어,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에서 원금에 관하여만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약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64,500,000원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변경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이자 약정이 없는 금전채권도 그 이행기 다음 날부터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고,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위 판결의 판시는 타당하지 않다.
- 63) 민사법정이율,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는, 민법-채권총칙-채무불이행책임-손해의 발생과 범위 부분 참조.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채무,⁶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 공사의 보험금지급채무,⁶⁵⁾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⁶⁶⁾ 화해 조항에 금원지급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무런 명시가 없는 경우⁶⁷⁾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다.

2. 상사법정이율 등

상법 - 상행위 - '상사법정이율' 부분 참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가. 특례법 제3조 제1항

1) 법 규정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2015. 10. 1.부터는 연 15%, 2019. 6. 1.부터는 연 12%)에 의한다.⁶⁸⁾ 다만,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⁶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64)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파산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에는 다양한 종류의 파산채권 원본과 그에 대한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채권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 원래 채권의 성격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배당절차는 금전화 및 현재화를 거친 파산채권 원금 및 파산선고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배당재원의 범위 내에서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로서, 배당률을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 지급채무의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재인자의 의무이지 파산자의 의무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배당금 지급채무는 파산채무의 원래 속성이나 파산자가 상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민사채무로 봄이 상당하고, 그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법정이율도 원래 파산채무의 속성이나 약정이율 혹은 채무명에서 정한 지연이율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민사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65)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0108 판결.

66)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 ...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 이에 반하여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은 상법 소정의 연 6%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적용이율이 쟁점으로 되지는 않은 사건이었다.

67) 대법원 1986. 9. 9. 선고 84다464, 1951 판결.

6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전부개정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시행 2015. 10. 1.] 및 [일부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참조.

69)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7595, 77601 판결: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피고가 새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그 반소가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었으나 위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

특례법 제3조 제1항).

2)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또는 심판'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사건에도 적용되고,⁷⁰⁾ 가지급물 반환 판결⁷¹⁾에도 적용된다.

위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 원본의 이행청구가 소송물일 때 그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그에 덧붙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당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⁷²⁾ 따라서 채무부존재확인,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는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 253297 판결(항소심에서 원고가 새로 청구를 추가한 경우).

69) 앞서 본,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와 동시에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70) 토지수용으로 인한 기업자 내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사건에도 적용된다(91누11254).

71)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상소심 판결의 선고로 그 선고가 실효됨으로 인하여 그 금원의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가지급물의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익의 반환채무라 할 것이므로 그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례법 소정의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 판결에서 '상법 소정 법정이율인 연 6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부분은 2003다52944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다.

72)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피고에 대한 판결로 확정된 2억 3,000만 원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억 3,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된 후 원본 2억 3,000만 원은 청구에서 제외하고, 그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원고가 양수금 원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이상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송달 다음 날인 2020.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예).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는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이행 청구는 각각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상의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우선 위 특례법 제3조가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가 제기된 후라고 하여도 원래의 금전채무를 스스로 이행한 채무자에게 그러한 불이익을 가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법규정은 위와 같이 금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한다고 할 것인데, 규범위반자에 대한 처벌 내지 제재는 사법에서 일반적으로 추구되지 아니하는 법목적이어서 이를 보다 신중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 특례법 제3조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또한 같은 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지연손해금 발생의 연원이 되는 원본채무가 채무자의 이행으로 소멸하여 그에 관한 이행판결이 선고될 수 없는 이상 위 법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아파트 인도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소송 계속 중 지급된 3억 2천만 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의 지급만을 명한 사례). ■ 원래의 금전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지연손해금 합계액을 원본으로 하고 그 원본과 그에 대한

에 위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⁷³⁾

3) '선 고'

위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당해 사건의 피고에 한하여 적용될 뿐이고, 그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위 법정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⁷⁴⁾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에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의미는 '이행권고결정의 고지일'인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⁷⁵⁾

4)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 대한 이자, 부당이득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하는 이익에 대한 이자 등과 같이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과는 별개인 법정이자에 대해서는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수탁자에게 '신탁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민법과 그 특별규정인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⁷⁶⁾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소구하여 원본 지연손해금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원본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해서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 위 2010다50922에서, 원고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합산하여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합산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대청구로 구하지는 아니하였는데, 합산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였다면, 합산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인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73)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익이 있는 경우 이익채권의 전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로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적용되지 않는다(2012다32713).

74)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에게 그 판결에서 명한 위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 중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공동으로 면책시킨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변제능력 부족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위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개인의 주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지연손해금이 피할 수 없는 비용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5402 판결).

75) 대법원 2013. 6. 10.자 2013그52 결정.

76)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2다44358 판결;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당사자 간에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손해금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⁷⁷⁾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보다 높은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소정의 '고시이율'에 좇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⁷⁸⁾

위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지연손해금은 채무의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 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⁷⁹⁾

5)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위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 하면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할 수 있다.⁸⁰⁾

6) '장래이행의 소'의 경우 적용 배제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⁸¹⁾ 사해행위의 취소와 동시에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⁸²⁾ 등이 그 예이다.

것) 제38조는 '수탁자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회복'이란 그 청구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배상액을 신탁재산에 편입하거나 또는 원물을 재취득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는 그 편입의 대상이 금전인 경우라도 단순히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구 신탁법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과 그 특별규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의무의 성질을 금전채무로 보아 원심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민법 및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 잘못이 있다."

77)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

78)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6561 판결.

79)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피고 미쓰비시은행에게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의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본채권의 준거법인 일본국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예).

80)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등.

81) 앞서 본 2001므725, 732 판결.

나. 특례법 제3조 제2항

1) 법 규정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위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된다.⁸³⁾

2) 추상적 의미

위 법 조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

위의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라 하겠으므로 채무자가 당해사건의 사실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건의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보아야 하고 그 선고 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⁸⁴⁾ 나아가 여기서 말하는 사실심은 당해사건의 제1심 또는 항소심이라 할 것이므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고, 따라서 항소심은 제1심판결 선고 시나 그 전후를 묻지 않고 그 기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⁸⁵⁾

82) 앞서 본 2007다61618 판결.

8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일부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의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그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기간 범위 안에서는 위 소촉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84)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의 범위”에 관계없이 이행의무를 명한 사실심 판결 선고 후에도 위 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229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365 판결)는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 변경되었다.

85)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상세한 내용은, 金起植,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관하여”, 재판과 판례(12집), 대구판례연구회, 548면 이하 참조.

3) '상당한 기간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예

구체적인 예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⁸⁶⁾ 원심이 제1심판결 인용 금액으로서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줄어든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⁸⁷⁾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라도,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⁸⁸⁾ 이는 매우 예외적으로 보아야 한다.

② ㉠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 후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비로소 내세운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⁸⁹⁾

③ 그러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일부를 취소하였으나 그 취소된 부분이 제1심이 인용한 공사대금과 약정손해금 중 약정손해금의 산출기준이 된 지체기간의 계산을 직권으로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여 극히 소액이고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제1심과 동일한 입장에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이라면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장 송달 익일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 특례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⁹⁰⁾

86)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등.

87)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88) 대법원 1998. 5. 8. 선고 95다30390 판결(주택조합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해산인가를 받은 다음 그 조합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납부한 개발부담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국가로서는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부과받은 개발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택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8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43767 판결 등.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163, 31170 판결은, '원심이 피고의 상계 항변의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하여도 피고에게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도 수긍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의문이다.

90)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전체 인용 금액 2,643,758,340원, 취소 금액 121,854원). 同旨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원심에서 취소된 부분이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공동면책을 위하여 지급한 손해배상액 자체가 아니라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었던 비용 기타의 손해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 중의 일부에 해당하고, 그 취소된 금액도 소액으로서 원심이 인용한 금액의 0.7%에 불과하며, 나머지 구상금에 관하여는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입장에서 판결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③ ④ 항소심의 인용 금액 중 항소심에서 일부 추가로 인용된 금액에 관하여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으로서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과 취지를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⁹¹⁾

제1심이 인용한 청구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그 불복범위를 제1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하고, 이에 따라 항소심이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⁹²⁾

⑤ 원심판결이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재산상 손해의 금액이 제1심판결이 당해 손해에 관하여 인용한 금액 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원심에서 새로운 손해를 추가로 주장함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원고가 제1심에서부터 주장한 손해에 국한하여 보면 원심은 일실수입손해를 제1심보다 적게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재산상 손해금에서 공제하는 등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피고의 주장을 상당히 받아들인 경우, 피고가 원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함이 정당하다.⁹³⁾

④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⁹⁴⁾

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제2심에서 항소기각된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경우, 소송 진행 상황에 비추어 피고의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항쟁이 상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는 달리 소장 송달 익일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라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9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892, 42908 판결.

92)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93)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8526 판결.

94)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등.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⁹⁵⁾

⑥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⁹⁶⁾

⑦ 피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으나, 환송 후 원심이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경우,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⁹⁷⁾

⑧ 환송 후 원심에서 비로소 예비적 청구가 판단되어 인용된 경우, 환송 후 원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한다.⁹⁸⁾

95)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

96)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5723 판결 및 2004다50341, 98다61968, 96다17202, 97다6988, 95다51960 등. ■ 위 판결들은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을 '대법원의 환송판결 선고일'로 보았는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629 판결은 동일한 일반론을 판시하면서도 당해 사안의 판단에 있어서는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파기·자판하였다. 채무자가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2005다38614)이므로, 판례는 '대법원의 환송판결 선고일'을 원칙적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적어도'의 판시에 방점을 두고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97)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212 판결(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이 제기된 원고 주장이 인용된 경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환송판결 선고 후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98)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614 판결('원고들이 피고에게 컨트리클럽 정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다가, 환송 전 원심에서 채무인수에 따른 입회금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환송 전 원심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결과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로 대법원이 환송 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환송한 후 원심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비로소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금 전부와 지연손해금 일부의 인용판결을 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예비적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진술된 환송 전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예비적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고 진술한 외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방어방법으로서 따로 준비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예비적 청구가 추가된 이후에도 환송 전후를 불구하고 심리의 중점은 주위적 청구의 당부에 모아졌고, 예비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된 일은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소송의 경과, 특히 주위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환송 전후 그 결론을 달리할 정도로 그 인용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탓으로 돌릴 만한 소송지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의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이므로, 주위적 청구의 인용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로서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일응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 사례).

4) 소송물별 판단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소송물별로 판단하여야 한다.⁹⁹⁾

따라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개의 청구 중 어느 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과 동일한 입장에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면 그 부분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¹⁰⁰⁾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지급명령에서 병합된 각 소송물마다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¹⁰¹⁾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¹⁰²⁾

다. 기 타

지연손해금에 관한 위 특례법 적용에 관한 당부는 직권판단사항이다.¹⁰³⁾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위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¹⁰⁴⁾

99)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100)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19034 판결(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계약금 등 선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102호 매각대금의 상계처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인용하면서 그 인용금액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였고, 원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계약금 등 선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이는 102호 매각대금의 상계처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입)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계약금 등 선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제1심과 동일한 입장에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그 인용금액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101) 관리비 청구소송은 그 관리비의 청구대상이 되는 점포마다 하나의 소송물을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점포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2006다73966).

10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위자료와 제1심판결에서보다 줄어든 소극적 손해액 및 적극적 손해액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지만, 제1심판결이 인용한 위자료로서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금액에 관하여는 같은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2006다32446).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손해액 중 적극적 손해액은 일부 줄여서 인정하였으나, 위자료는 똑같이 인정하고, 소극적 손해액은 더 많이 인용한 경우, 항소심이 인용한 소극적 손해 가운데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과 제1심판결에서보다 줄어든 적극적 손해액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만, 위자료와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소극적 손해액으로서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금액에 관하여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002다34581).

103)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104)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지연손해금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4. 약정이율

민법－채권각칙－‘소비대차’ 부분 참조.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위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